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614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9. 선고 2019가소261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C은행 착복금 2,226,600원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연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2012. 12. 14. 원고와 이혼하였는데, 원고에게 수급자격이 있는 연금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혼 이후인 2012. 12.부터 2015. 4.까지 원고의 국민연금 6,857,96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연금수령권한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준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한 1/2에 해당하는 금원 3,428,98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1. 5.자 대여금채권 1천만 원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혼 이후인 2012. 12.부터 2015. 4.까지 6,857,960원을 수령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1978. 11. 6. 혼인하였고 200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연금에 대한 수급자격이 있었던 점, 피고는 위 2008.경부터 이혼하기 이전인 2012. 11.까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연금을 직접 수령하여 왔고, 혼인생활 중에는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점, 피고는 2012. 12. 24.부터 2013. 4. 25.까지는 C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2013. 5. 24.부터는 D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D은행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명확인필 란에 E이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D은행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함께 D은행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2019. 12. 11.자 참고서면), 원고는 위 연금수령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및 C은행 착복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비용 3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2,226,600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증비용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원고 소유의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이승일, 판사 문유진